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침해국가 수출·수입 제한 또는 금지〉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0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권침해국가 수출·수입 제한 또는 금지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7.
3. 회부연월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음. 사안에 따라 가해행위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국제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일정수준의 제재가 뒤따르기는 하나, 인권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등을 통해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과의 거래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무역을 지속하는 현실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여론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무역거래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더 높은 인권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음.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기준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최근 ESG 경영원칙의 보편화에서 보듯, 거래상대의 인권침해에 가
담하거나 묵인하는 기업과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무역경쟁력이 약화
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에서 상무부가 인권침해와 관련된 특
정 단체를 목록에 올려 수출입 등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EU 또한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인권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호의
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권침해국가 수출·수입 제한 또는 금지

개정안은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된 경우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호의3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 4의2. (생략) <u><신설></u>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증진하되, 법령·조약상 필요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¹⁾,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거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무이행, 인간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제한·금지 등의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현행법 상 무역제한조치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u>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u>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조사, 관계부처 및 교역상 대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특별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 UN 총회 및 안보리 제재 결의, 즉 현행법 제53조제4호의 사유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로 이라크, 소말리아, 북한 등에 대한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그 중 내전 및 인권탄압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UN안보리 제재 결의²⁾가 채택된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무역제재를 위반한 국내 기업은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³⁾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2) UN안보리 제재국(사유): 이라크(쿠웨이트 침공),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리비아,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남수단(내전 및 인권탄압 등), 레바논(폭탄테러), 북한(핵개발)

3)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표 3] 인권사유 관련 UN안보리 무역제재국 및 제재내용 현황

UN안보리 제재국	무역제재 주요내용
소말리아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금지
콩고민주공화국	무기 등 수출 금지
수단공화국	다르푸르 지역 내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금지
리비아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및 수입 금지
시리아	화학무기 수입 금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금지
예멘	특정 제재대상자에 대한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금지
남수단	무기, 군용장비 등 수출 금지

그러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의혹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UN 안보리 제재 결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 및 고시에 따른 무역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음.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군용물자의 수출허가 중단,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의 제한조치(「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실시할 수는 있음⁴⁾⁵⁾.

4)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

개정안은 UN 총회 또는 안보리 제재 결의 등이 없더라도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 행위가 우리나라 무역과 연관되는 경우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국, EU 등과 같이(참고자료 참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국제기구의 결의 없이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출입 등을 제한하는 경우, 상대국은 국제기구가 아닌 우리나라를 직접 대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지 않고 선제적·독자적으로 인권침해 행위의 사실관계, 심각성 등을 판단하고 관여하는 데 수반되는 외교관계 민감성, 수출입 제한에 따른 국내 기업활동 제약 및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이하 생략)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는 인권침해행위 국가 지정에 따른 외교관계 저하, 무역제한에 따른 기업활동 제약 발생 가능성과 현행법으로도 인권침해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과 같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6

1. 미국

□ (근거)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수출통제) 인권침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무역제한을 하지 않고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수출제한 목록인 Entity List에 등재***하여 사실상 수출 불허 → **Presumption of Denial**

* '21.12월, 소수자 탄압·감시에 바이오 기술 등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등 34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Entity List에 등재한 사례

2. 유럽연합

□ (근거) EU이사회 수출통제 규정(EU Council Regulation 2021/821)

□ (수출통제) 기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외 **사이버 감시 품목*도 Catch-all****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추가

* 정보통신 데이터를 감시·추출·수집·분석하여 개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 공통적으로 통제를 하는 품목 외에 특정한 사유(무기전용 가능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 해당시 추가적으로 수출허가 의무를 부여

< 참고 : EU이사회 심각한 인권탄압 및 침해에 대한 제한 규정 >

(EU Council Regulation 2020/1998)

※ EU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119명 및 단체 36개를 지정하여 자산동결 및 여행제재를 부과하고 있음.